

교수협의회의 위상과 과제

신 현 직 / 계명대 공법학과 교수

그동안 권위주의적 관료주의에 신음해 온 우리 대학들이 학생들의 희생 위에 교수들의 자각과 실천에 의해 자기 위상을 정립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교수자치기구의 대학주체로서의 자리매김은 무한한 창조의 가능성과 학문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소모와 비능률을 줄이고 인력을 최대한 개발·활용할 수 있는 대학 체제를 위해서라도 교수자치기구로서의 교수(협의)회가 학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법제화되는 것이 시급하고도 절실히 요청된다.

1. 교수협의회의 성립

1980년 이전에도 교수자치기구를 조직하려는 노력들은 있었으며, 특히 4·19혁명기에는 교원노조 운동에 교수들이 동참하면서 대학 개혁을 위한 주체로서 활동하기도 하였다. 4·19와 교원노조 운동의 진원지였던 대구에서는 경북대학교 교수들이 총장 직선을 실시하였고 동년 5월 각 단과대학에서 선출된 2~3명의 대표들이 모여 학장은 물론 처장, 대학원장 등의 모든 보직자에 대한 선출제와 임기제(2년), 총장의 4년임

기제, 총장 이외의 모든 보직자의 판공비와 직무수당의 폐지, 본부 권한의 단과대학으로의 분산 조치, 기구개편에 의한 직원 감원, 차량 축소 등을 결의하고 시행하였다.¹⁾

그것은 80년대 이후의 교수협의회나 평의회의 원형이라 할 수는 있지만, 본격적인 조직체로서의 성격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교수협의회라는 명칭의 기구가 존재하지는 하였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수친목기구에 불과한 것으로 현재의 교수자치기구로서의 의사결정기구는 아니었다.²⁾

1) 『서울대 교수협의회보』, 1992년 9월, 37~38쪽.

2) 서울대의 경우에는 이미 1964년부터 교수협의회가 존재하고 있으나 그것은 '친목도모와 권익보호 및 학교발전에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협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학사운영에 관한 권한규

유신체제가 무너지고 민주화의 봄이라 불리는 80년의 봄에 이르러 본격적인 교수협의회의 조직화 작업이 전국적으로 시도되었으나³⁾ 그 또한 5·17 계엄확대조치와 5·18 대학휴교령 및 신군부의 등장으로 수많은 해직교수들만 남긴 채 무산되고 말았다.

그후 1987년 6월 10일부터 시작된 민주화 대행진 기간중에 시국선언 서명교수들을 중심으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의 결성이 시도되었으며⁴⁾ 동시에 각 대학에서는 교수협의회의 구성을 위한 준비작업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⁵⁾ 이때의 시도들은 과거에 비해 신중하게 진행되었다. 즉, 과거의 시도들이 군부의 등장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었던 대학일수록 신중한 행보를 기하였고 6·29선언⁶⁾으로 6월항쟁의 승리가 확인된 후에도 상당한 준비기간을 두면서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규정을 마련하고 나서 창립총회를 갖거나 전체교수회의에서 확정짓는 방식들이 행하여졌다는 점은 과거에 비하여 훨씬 발전된 모습이라 할 것이다.

종래 교수회에 관한 사항은 교육법시행령 제 56조에서 학칙 기재사항으로 되어있고, 그에 따라 각 대학의 학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교수회는 교수자치기구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학내의 모든

의사결정의 최종권한은 총·학장이 갖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총장이 소집권을 갖고 의장이 되는 교수회는 그나마 포괄적인 사항에 대한 형식적인 심의권만을 가질 뿐 필요한 의결권을 갖지 못하는 자문기구에 불과한 것이기에 그 운영 또한 단순히 총·학장의 지시전달을 위한 기구로 기능하여 왔다. 그러한 상황에서 총·학장이 독주하는 형식적인 교수회를 탈피하여 진정한 교수자치기구의 존재가 요청되었고, 민주화로의 이행이 시작된 1987년에는 전국적으로 교수협의회의 창설은 모든 대학의 당연한 움직임이었다.⁷⁾

2. 교수자치기구로서의 교수협의회

종래 교수들의 공식적인 회의체인 교수회와 새로이 등장하게 된 교수자치기구로서의 교수협의회의 관계는 그 발생배경에서도 나타나듯이 그동안 우리 사회가 갈등하여 온 과정에서 나타난 것과 비슷한 제도권과 재야권과의 대비와도 같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대립이 사회민주화와 대학민주화의 대세에 의하여 재야권의 주도로 양자가 혼재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정착이 요청되는 시기에 이르렀다.

정이 없는 것이었고 현재도 마찬가지다(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정관 참조). 충남대의 경우에도 1971년 교수협의회가 창립되었으나 그것 또한 '친목도모와 권익옹호'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어 온 것이었고, 88년 7월 회칙개정을 통하여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화의 추진'이라는 목적이 추가됨으로써 변화를 도모하게 되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보』, 1992년 9월, 43쪽.

3) 서울대, 경북대 등.

4) 결성대회는 6월 22일에 개최되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되고 9월에야 성균관대에서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5) 계명대는 6월 18일 전체교수회의에서 교원대책수호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교수협의회 구성을 위한 전권을 위임하였다.

6) 6·29선언 제6항에서는 교육민주화의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대학운영의 민주화, 총·학장의 선임, 인사권의 위임, 사립대 총·학장의 취임승인제 폐지, 교수재임용제 폐지,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등이 제시되었다.

7) 87년 여름 경기대 교수협의회 정관, 계명대 교수협의회 규칙, 고려대 교수협의회 회칙, 동아대 교수협의회 규정, 목포대 교수협의회 규정, 연세대 교수협의회 규정, 영남대 교수협의회 회칙, 원광대 평교수협의회 회칙, 전남대 교수협의회 규정, 전주대 평교수협의회 규정 등이 마련되었다.

그간의 경과에서 보듯이 당해 대학의 교수집단의 인식수준과 능력 및 의지와 그에 대한 기존의 학내 지배집단간의 역학관계에 따라 교수집단이 대학의 주체로서의 스스로의 위상을 정립해간 대학들과, 아직도 혼란을 벗어나지 못한 채 도리어 민주화의 대세에 역행하는 움직임마저 나타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과거의 비민주적인 학교권력의 지배 아래 교수협의 회조차 결성하지 못하거나 그러한 시도조차 와해되어 대학주체로서의 교수집단의 위상을 찾지 못하고 있는 대학들이 많다.

그것은 재단이나 소위 교수 등이 존재하지 않는 국·공립대학이 대학자치를 훨씬 빨리 실현해 가는 데 비하여 소규모의 교수와 강력한 재단지배가 오래 지속되어 온 사립대학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에서 분명해진다.

그것은 또한 교수자치기구로서 총장직선제를 쟁취하고 총의로써 학칙을 개정하였다는 점에서 학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자기 위상을 확보하였고 현실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스스로의 위상을 내부적으로 확립한 대학들조차도 과거의 악법들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이 규정한 대학자율성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교육당국의 권력행사에 의해 아직도 여러 방면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교수자치기구로서의 교수협의회의 등장과 더불어 대학 내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교수회의 자리매김이 현실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교육당국은 합리적인 이론적 논거는 제시하지 못한 채 단지 위헌적인 실정법령의 자의적 해석과 불법적인 권한행사를 통하여 이를 저지하려 하고 있다.

교육부나 사학법인이사회가 대학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은 우리 헌법 제31조 제4항의 대학의 자율성 보장 규정에 의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한 교수집단에게 그러한 권한을 넘겨줄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3. 교수협의회의 현실적 위상

교수협의회는 그 출발에서부터 기존의 집행부, 즉 총장의 전권행사에 대한 도전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고, 따라서 교수협의회가 총장의 선출권을 가진다는 것은 민주적인 학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자기 위상을 확보함과 동시에 총장의 집행권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총장직선제의 정착과정이 그것을 증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직선총장이 아닌 경우는 물론이고 일부의 직선총장조차도 교수협의회에 적대적이거나 권한관계에서 대립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초기에 나타났던 것과 같이 일단 총장을 선출하였으면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소박한 생각을 가진 교수들이 다수였고, 과거의 관료주의 내지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교수협의회의 학사운영에의 권한행사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에 서있는 교수 또한 적지 않았다. 물론 시간의 흐름과 사회의 변화는 그들의 사고를 변화시켰지만, 동시에 기득 보수세력들의 새로운 반동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집행부의 최고책임자인 총장과는 관계는 대학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해 왔다.

이러한 변화를 겪으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은 ①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는 공화관계, ② 상호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식적인 관계설정을 모색하는 협약관계, ③ 교수협의회의 기본 입장을 이해하는 총장에게 맡겨버리는 위임관계, ④ 신뢰상실로 인하여 상호 적대적으로 변해버린 대립관계, ⑤ 배신으로 인하여 교수협의회가 와해되는 지배관계, ⑥ 긴밀한 협조나 갈등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관계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①의 공화관계에는 대부분의 국립대와, 교수

와 학생의 힘으로 법인지배를 벗어난 사립대학들이 해당한다.⁸⁾

②의 협약관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울산대에서 찾을 수 있다. 울산대의 경우에는 88년 6월 총장과 교수협의회 대표 간에 협약을 맺어 상호관계를 정립함으로써 분쟁을 막았고 93년 12월 또다시 학사운영에 관한 권한과 절차에 관한 새로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상호관계를 재정립하였다. 거기서는 학칙의 제정 및 개정, 예·결산의 심의, 교육·연구 및 대학 운영에 대한 건의, 교원의 신규임용·승진·재임용에 관한 기준 및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심의, 교육 및 연구기구의 설폐에 관한 사항 심의, 단과대학장의 선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⁹⁾

③의 위임관계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교적 교수층이 두텁고 역사가 긴 사립대학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단 교수협의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총장이 선임되면 대다수의 교수들이 더 이상의 번거로운 일에 매이기를 원치 않고 실제 그리 무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교수협의회의 학사운영에의 참여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거나, 외압으로부터 대학을 보호하기 위해 총장을 도와주고자 하는 상황에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¹⁰⁾

④의 대립관계에 해당되는 예는 과거에 소위 교주나 이사장의 일방적 학교지배가 관철되어 온 대학에서 총장직선에 의해 과거 지배세력자가 재등장한 경우에 나타나는 것으로 교수자치

기구나 민주화에 대한 인식이 없는 총장이 과거에 심어놓은 자기세력을 기반으로 총장직에 왕정복고함으로써 새로운 통치자로서 군림하려는 생각에 교수협의회를 단순한 자문기구 내지 아이디어뱅크 정도로 대우하고 무시함으로써 새로이 갈등이 생기는 경우이다.¹¹⁾

⑤의 지배관계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교적 소규모의 대학에서 양세력이 모두 크지 않을 경우에 총·학장의 당선자 내지 신임 총·학장이 변화하지 않는 교육법 현실에 편승하여 교수협의회를 파괴할 경우¹²⁾ 또는 비교적 큰 규모의 대학이라 할지라도 당해 대학의 전통상 교수협의회가 전체교수들에 지지기반을 갖지 못하고 재단의 지배가 계속 유지되어 온 경우¹³⁾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⑥의 무관계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울대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서울대가 갖는 위상과 이에 상응한 대우, 국립대로서의 플러스 요인, 교수집단의 규모가 비대하여 전체교수회가 아예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설립 과정에서부터 연유한 단과대학 중심의 분권체제와 단과대학교수회의 활성화 등이 그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의 과제는 공화관계 경우의 대학이 앞장서서 각 대학 교수협의회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위임관계 경우를 활성화하고 무관계 경우를 동참시키며 ④의 대립관계 경우를 해결함으로써 대세를 이끌어 가서 ⑤의 지배관계 경우를 해소하는 것일 것이며, 아울러 대립관계와 지

8) 국립대의 경우 목포대를 비롯하여 최근에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경북대를 들 수 있고, 사립대의 경우 재단분규를 해결하고 교수협의회가 총장직선을 쟁취한 대구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9) 협약서, 『울산대 교수협의회보』, 12호(93.12), 14쪽.

10) 총장이 진보적 입장에서 학사운영을 추진함으로써 받게 된 외압으로부터 학교를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경우로 영남대를 들 수 있다.

11) 계명대가 대표적인 예이며 교수협의회의 힘도 강하고 기존의 세력도 강한 대학들에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문제의 사례라 할 수 있다.

12) 예로서 강릉대를 들 수 있다.

13) 예로서 대구효성가톨릭대를 들 수 있다.

배관계의 경우는 협약관계의 경우로 가는 것도 현실타개책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대학자치의 주체로서의 교수(협의)회

여기서 대학의 자치 내지 자율성 보장의 구체적인 주체는 누구인가의 문제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현대 대학의 완전한 자율은 특권이 아니고 대학의 기본권으로서 자연적 권리다.¹⁴⁾ 대학자치 내지 대학의 자율성 보장은 이미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음에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대학자치란 인사·재정 등 학사운영에서 국가 또는 사학법인 등의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이고, 그러한 대학자치의 주체가 교수회임에는 헌법학상 이론이 없다.¹⁵⁾ 하지만 그것은 헌법학상의 이론에 그칠 뿐 우리의 현실은 온갖 핑계를 들어 이를 부정하려는 사실적인 힘과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 교수회 자치란 무엇이며 어떠한 논거를 가지는가에 관한 논점은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고,¹⁶⁾ 현안이 되고 있는 교수회의 학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적격성의 문제만 검토하기로 한다.

대학은 학문연구기관인 동시에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학문연구와 교육의 주체인 교수와

교육당사자인 학생이 그 주체일 수밖에 없으며, 모든 국민이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서 대학의 자율성과 자치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수집단이 1차적인 주체가 되어야 하며, 학생 또한 참여할 수 있어야만 한다.¹⁷⁾ 따라서 최고의사결정기구를 교수집단만으로 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다. 최고의사결정기구를 교수집단만으로 구성할 경우에 또한 그들의 집단이기주의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학생 및 기타의 대학구성원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대학 본연의 사명에 충실치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교수를 중심으로 하되 학생, 조교 등 관련 당사자나 구성원의 참여의 길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외국 대학들의 예에서 쉽게 확인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학칙 제정과 총장선거를 위하여 중앙합의기관이 구성되어야 하며, 이 기관에서는 연구·예술창작·교수와 교수임용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의 대표기관은 교수·학생·조교·기타 협력자로서 구성되고 규정하고 있다.¹⁸⁾ 프랑스의 경우에는 대학행정의 자율을 위하여 80인 이내의 선출된 평의원으로 구성되는 평의회를 설치하되, 그 구

14) Jaspers/Rossmann, Die Idee der Universität, 1961, S. 230.

15) 권영성, 『헌법학원론』, 1992, 220~224쪽; 김철수, 『헌법학개론』, 1992, 438~441쪽; 허영, 『한국헌법론』, 1994, 400~403쪽.

16) 그에 관해서는 줄고, “교수회자치 소고”, 한국교육법학회편, 『교육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 대학출판사, 1986, 73~94쪽 참조.

17) 학생단체는 역사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헌법제정자보다 앞서 존재한 대학의 본질적 구성요소이며 대학의 자치의 일부분으로서 독일기본법 제5조 3항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다고 보며(Deumeland, RdJB 1970, 275; Bartsch, Die Studentenschaft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 Aufl., 1971, S.222; Deumeland, Hochschulgesetz Nordrhein-Westfalen, 3.Aufl., 1973, Erläut.zu § 24), 나아가 학생단체의 구성은 대학정책적 중요성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OVG Saalouis, Beschluss v.29. 5. 1974 -IW 11/74, S. 100).

18) 대학기준법(Hochschulrahmengesetz), § 63 및 § 38.

19) 고등교육법(Loi N 68-978 du 12 novembre 1968 d'orientation de l'enseignement superieur), § 11~18.

성은 교수·연구원·학생·직원·기타 능력이나 지역활동에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선출된 교외 지식인으로 하고 있다.¹⁹⁾

우리와 가장 유사한 교육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의 대학평의원회 제도도 그러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에서 이사 정수의 두 배를 넘는 수의 평의원으로 조직되는 평의원회를 학교법인에 설치하도록 하고, 평의원의 선임은 법인직원, 졸업자, 기타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해 선임된 자로 하도록 하고 있다.²⁰⁾ 따라서 각 학교는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대체로 교수회 선출의 전임교수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학생대표, 직원대표, 기타 동창회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²¹⁾

5. 위상 재정립

1) 현행법상 대학평의원회제도의 문제

일본의 교육법체계를 형식적으로 도입한 우리 교육법체계에서도 대학평의원회의 제도를 국립대학에만 허용하는 법제를 채택하였고 90년부터 사립대학에도 확대하였지만, 그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이어서 구성조차 되지 않은 채 사문화되어 왔다. 그 이유는 어차피 그 구성이 관련집단에서 선출되는 대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기능 또한 자문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총장을 비롯한 소위 학교당국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할 뿐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기구이며, 교수 등의 입장에서는 무의미한 기구이기 때문이었다.²²⁾ 현행법상의 대학평의원회 제도를 실

질적인 권한을 갖는 대표성 있는 기관으로 하더라도 오늘날과 같은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당장 그 제도를 시행할 수도 없다. 그것은 실질적 권한을 갖는 대표성 있는 기구로의 법개정을 할 의사가 교육당국에게는 없으며, 그러한 변화가 없는 제도에 현재의 교수협의회들이 동의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학내 최고의사결정 기구를 마련하고자 한다면 현행법상의 대학평의원회 제도를 개선하여야만 한다. 즉, 교육법 제117조에서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를 '대학의 운영을 위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로 바꾸고,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교육법'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즉, 동법 시행령 제139조 내지 제142조의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의 '대학의 장이 위촉하는 40인 이내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되 보직교수 및 교육에 저명한 인사 중에서 위촉하는 평의원의 수는 전체의 1/2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교수회에서 선출된 전임교원·보직교수·학생대표·조교대표·직원대표·기타 총장이 위촉하는 학교협력자 등 30인 이상 50인 이내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되, 교수회에서 선출된 전임교원의 수는 전체의 1/2 이상, 보직교수와 총장이 위촉하는 학교협력자의 수는 전체의 1/4 이내'로 하고 '기타 사항은 각 대학 학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교육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부의 입장에 비추어 불

20) 사립학교법 제41조 및 제44조.

21) 일본의 사립학교법상의 평의원회는 법인이사회를 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예로서 예산, 차입금 및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 합병, 해산, 수익사업, 기타 법인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한 것 등에 관해서는 이사장이 미리 평의원회의 의견을 들어야만 하며(제42조), 평의원회는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 상황 및 임원의 업무집행 상황에 관하여 임원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문에 답하며 또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3조).

22) 교육법 제117조 및 동시행령 제139~142조.

때 교수회 선출의 전임교원이나 학생대표, 조교대표, 직원대표 등이 참여하는 기구를 인정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 현실적으로 볼 때에도 교수회 선출의 전임교수를 제외하고는 학생대표나 조교대표의 참여 등에 실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선 우리 국민의 정서는 국회 등의 대의기구의 대표성에 대한 불신이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선거에서 보듯이 간선제를 부정하고 직선제를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고, 학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총장직선에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곧 대학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의미가 상설적 회의체로서가 아니라 대학의 최고 집행자인 총·학장의 선출권과 분쟁 발생시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정통성을 갖는 기구라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총회의 모습이란 학생과 직원 등이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하기에 어쩔 수 없이 전체 교수집단에 맡기되, 상설적 회의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 대의기구로서의 대학평의회에는 학생·기타 구성원의 참여가 가능하고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평의회 설치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과도기적으로라도 기존의 전체교수회 또는 그 대의기구로서의 교수평의회가 학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자리매김되는 것이 최선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2) 교수협의회와 교수회,

교수평의회와 교무회의의 관계

여기서 기존제도로서의 교수회와 새로운 자치기구로서의 교수협의회의 관계, 교수평의회 위상과 기존의 교무회의 또는 학·처장회의와의 관계설정이 문제된다. 우선, 교수회와 교

수협의회는 전체교수집단이라는 동일한 구성원을 가진 회의체로서 학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정통성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단일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양자는 그 소집권자이자 주재자인 의장을 총장이 맡느냐 별도로 선출하느냐에 따라 현실적으로 커다란 차이를 나타낸다.²³⁾ 그러한 차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학에서는 교수회로 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교수협의회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단일한 교수회로 하되 그 의장을 별도로 선출하는 방식이 요청되며 그 결정 또한 당해 대학이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차피 교수회의 규모가 커지면 총장 선출이나 불신임을 위한 투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교수회가 회의체로서 기능하기는 어렵다. 그럴 경우 기존의 교무회의(또는 학·처장회의)와 교수평의회 중 어느 기구가 그 대의기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여기서는 역시 분리형과 통합형의 선택의 문제가 되는데, 우리의 정부형태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서 보듯이 기관의 분리와 상호견제의 방식이 우리에게 적합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집행기구로서의 교무회의와 의사결정을 위한 대의기구로서의 평의회를 양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물론 이것도 당해 대학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령으로 통합형을 강제하는 현행법체계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6. 과제

87년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어온 교수협의회 운동은 이제 대다수의 대학에서 실질적인 대학자치기구로서 정착되어가고 있으며, 여러

23) 그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육부의 지침에서 '총장 또는 학장이 의장이 되는 교수회'만을 인정하려 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가지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국립대학간, 사립대학간의 연대기구들을 통하여 각 대학에 맞는 형태로서의 자기 위상을 형성해가고 있다. 총·학장선출제나 학칙개정의 작업들은 실정법 규정의 여하를 떠나 기정사실로서의 규범적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나, 최근 대학교육협의회가 마련한 총장선임 6개 유형안에서 기존의 총장직선제가 배제되고 있음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로서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정치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국가권력에 의한 통제는 상당히 완화되고 있지만 개정되지 않는 과거의 법령에 기초한 비민주적 관료주의의 행정관행은 엄존하고 있으며, 권위주의적 통제장치가 느슨해진 틈을 타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대학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사학법인이나 일부 총·학장들의 준동 또한 더욱 거세어지고 있고, 국제화시대라는 미명 아래 무한경쟁 논리의 파도 속에 우리의 교육과 학문의 위상은 더욱 흔들리고 있다.

굳이 국제경쟁시대가 아니더라도 대학에 요구되는 것은 다름아닌 학문과 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일일 것이다. 학문과 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일은 정부나 총장 개인의 행정력만으로 역지로 되는 일이 아니며, 그것은 교수와 학생이 자발적으로 창조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선진국의 우수한 대학들이 오늘날의 학문업적과 인재양성의 성과를 거

둘 수 있는 것은 긴 역사 속에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확립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권위주의적 관료주의에 신음해 온 우리 대학들이 학생들의 희생 위에 교수들의 자각과 실천에 의해 자기 위상을 정립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교수자치기구의 대학주체로서의 자리매김은 무한한 창조성과 학문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 이상의 소모와 비능률을 줄이고 인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대학체제를 위해서라도, 아울러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서도 교수자치기구로서의 교수(협의)회가 학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법제화되는 것이 시급하고도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따라서 교육부와 사학법인의 감독 내지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학학칙의 완전한 자율권을 보장하는 관계법령의 개정이 시급히 요청된다 하겠다. ■

신현직/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육군제3사관학교 법학 전임강사, 독일 본 대학 연구교수 등을 지냈으며, 현재 계명대 공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공저로 『주석헌법』이 있고, “기본권과 제도보장”, “교수회자치소고”, “사립학교의 법적 지위”, “교육기본권에 관한 연구”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